

特 輯

## 농산물 포장의 문제점과 개선점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국장 강성수

### 1. 머릿말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소비자들은 물론 중간 유통인들에게 있어서 물류개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그 자체의 특성상 보다 많은 물류비용이 소요된다.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물류비용의 절감은 경제적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은 생물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생산과 소비의 영세성으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많은 유통비용이 소요된다. 게다가 WTO 체제의 출범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과 함께 외국 유통업체의 시장진출로 국내의 농산물 유통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유통업체의 선진화·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소비수준의 고급화·다양화, 포장화·브랜드화 등으로 새로운 유통질서와 유통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유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산지에서 고품질 농산물이 규격화, 포장 출하되고 대량수송과 하역기계화 등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의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 2. 농산물 포장화 필요성과 실리

농산물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겠지만 그중에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는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농산물의 포장화를 통한 표준규격화는 점진적인 수송차량의 대형화로 단위당 수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농산물 포장화사업이 정착될 경우엔 소비자도 매시장내 경매단계에서 경락가격 및 거래량이 정확히 파악되고 해당 경락가격이 투명하게 고시되어 도소매 단계에서 적정마진만을 부가하게 되며 소비자가격도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농산물 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악취와 폐수의 발생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수반된다. 산지에서 농산물이 선별·포장되어 출하되면 이같은 쓰레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셈이다. 게다가 제값 받기 위한 상품성 향상의 측면에서도 농산물의 포장화는 운송과정에 감모손실을 방지하고 품질관리의 체계화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산물출하를 포장출하로 개선하면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기존의 산물출하품의 배송·상하차·상품진열 등으로 취급상 불편함을 제거하는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 3. 농산물 포장화 지원사업

우리나라 농산물 포장실태는 과실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배추, 무, 파, 수박 등 엽근채류는 상관행과 작업곤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지난 96년도에 거래된 140여개 품목중 엽근채류의 포장화율은 배추가 16.5%, 무 10.3%, 수박 4.5%, 파는 3.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거래비중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포장규격 표준화 검토 자료집(1997년)』을 보더라도 포장화가 정착단계에 있다는 과실류와 과채류는 중량(수량), 포장재규격, 포장형태등의 표준화가 각 출하처(출하자)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물류비절감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의 포장화와 관련된 지원사업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개선 시범사업 등이 있다.

#### 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소비패턴의 변화, 유통시장 개방, 대단위 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며 농산물의 규격상품화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집하, 선별, 세척, 포장, 판매, 유통정보 수집·전파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1998년까지 431개소에 523억원을 지원했고 1999년엔 69개소에 231억원을 지원하여 2000년까지 총 695개소에 1,0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②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 및 상품화하여 농산물의 대량유통, 견본·통명거래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농산물을 규격 출하하는 생산자조직을 지원대상으로 포장재 단가(700 원/매)의 30%(210원/매)을 보조한다. 98년까지 634백만매를 국고 517억원, 지방비 519억원을 지원했고, 99년도에는 179백만매를 국고 376억원, 지방비 125억

원을 지원한다.

#### ③ 포장개선 시범사업

배추 등 산물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의 산지포장화를 통하여 소비자에서 쓰레기 발생감소, 도매시장의 환경 개선 및 공정거래를 도모할 목적으로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에 배추, 무, 양배추, 파, 수박, 마늘을 표준규격 골판지상자로 포장출하하는 자에게 골판지(8~10kg용) 당 600원을 지원한다.

또 표준파렛트에 적재출하하는 자에게는 다단식 목재박스(1100×1100×200mm)의 이용료 534원/매를 지원하고 매쉬파렛트(1100×1100mm)의 이용료 300원/kg을 지원한다. 그리고 무, 배추, 참외, 오이, 사과, 화훼등 농산물을 표준규격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하여 대량 수요자와 직거래하는 농협 및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농산물 검사소가 고시한 표준규격에 한하여 플라스틱 상자(5,500원/매)의 구입 비용중 50%(2,750원/매)를 지원한다.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지난 98년까지 국고보조 96억 원, 지방비 58억원이 지원됐고 99년도에는 국고보조 71억원, 지방비 12억원이 지원된다. 또 오는 2002년까지는 총 국고보조 298억원, 지방비 97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포장화는 상관행과 여건미비 및 인식부족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 4. 농산물 포장화 저해요인과 문제점

우선 표준출하규격에 대한 교육·홍보부족으로 농민등 출하자들은 표준출하 규격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작목반, 단위농협에서 구입한 포장재의 사용을 표준 규격출하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규격품과 비규격품의 농가수취가격의 차이가 적어 출하자들은 포장재의 규격품 사용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중간유통종사자들은 덤, 우수리 등 물량마진이 없기 때문에 포장출하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도매시장내의 일부 중도매인들은 거래의 투명성과 속박이 문제로 포장출하품보다 산물출하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또 다듬기 등 재작업 마진이나 물량마진이 적은 상품취급을 기피하여 경매에 응하지 않거나 담합하여 경락가의 인하를 유도하는 사례도 우려되기도 한다.

농촌지역에선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령화되는 추세인점에서도 선별·포장작업의 인력의존도가 높아(기계화율 31.3%) 표준규격출하가 부진하게 된다. 일부 과수농가는 선별기에 의한 중량선별을 실시하고 있으나 색택, 형상 등 등급구분은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엽근채류는 크기, 중량 등의 규격이 천차만별로 다양해서 규격별로 선별·포장하기가 어렵고 선별장이 아닌 밭에서 직접 선별·포장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렇다고 선별장으로 운반하기에는 품질 손상이 쉽다.

또한 등외품 등 불량농산물의 처리수단으로 속박이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로인해 도매시장 포장출하품의 경락가격이 예 영향을 줄 소지도 우려된다.

농가수취가격중 포장비의 부담이 많은데다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등락이 매우 심한 경우, 포장규격출하는 정착되기 어렵다. 출하자에게는 포장재 비용의 자부담분과 인건비가 보장돼야 하는데, 산물출하시보다 포장출하시에 실익이 없으면 출자는 포장규격출하를 기피하는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 5. 포장화 촉진제도 개선과 기반조성 홍보

지금까지 농산물의 포장출하가 정착되면 어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포장출하의 실태와 정부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포장출하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농산물의 포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내에서 포장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포장출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기반조성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포장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출하자나 유통인에 대하여 농산물 포장화의 당위성, 경제적 유리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전개해

야 한다. 포장출하품에 대해서 도매시장에 상장시에 우선 경매실시, 상장수수료 경감, 하역료 인하, 쓰레기 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산물출하품에 대해서는 쓰레기 유발부담금 부과, 다듬기 행위단속 등 제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포장작업의 단순화와 포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산지포장화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

농산물 포장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산지출하체계와 포장출하품의 적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 하역작업의 기계화를 위해 표준파렛트에 의한 적재가 이뤄져야 한다. 표준거래단위의 유통점유율이 낮고 도매시장내에서 거래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주산지별로 순위를 정해서 자금지원을 해야한다.

농산물 포장화의 조기정착은 도매시장내 단속강화 등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출하자와 중간유통인의 공감대 인식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농산물 포장화의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과 동시에 관련인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 산지유통인의 배추포장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 분	문 제 점	개 선 방 안
1. 배추 포장재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량포장재(압축강도, 저온저장시 통풍의 효율 등) 발생의 문제</li> <li>○ 파렛트의 충분한 수요량 미확보</li> <li>○ 포장재 보급시 보급장소에 회원이 없을 경우 거래명세표에 회원의 서명날인이 곤란. (포장재 인도, 인수량 오류 발생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량포장재 처리문제는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명시. (샘플링 검사 실시)</li> <li>○ 시장관리공사 및 관리사업소와 파렛트지원에 관한 협조요청</li> <li>○ 거래명세표에 회원의 서명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전유련 중앙물류”로 배송</li> </ul>
2. 회원의 포장재 취급·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의 취급부주의와 저장상의 문제로 인한 포장재의 파손</li> <li>○ 현실적인 가격 문제로 인한 타 시장으로의 출하</li> <li>○ 회원이 포장재 사용후 남은 재고품의 반품처리를 요구(산지에 야적 보관으로 인해 포장재의 상태가 불량)</li> <li>○ 포장재를 사용한 작업시 작업인력의 경험미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포장재의 손실은 회원의 책임”임을 서약서에 기재</li> <li>○ 재고품에 대한 반품처리 요구는 본 연합회가 인정하는 품질에 한하여 반품 회수한다.</li> </ul>
3. 포장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하장소 부족</li> <li>○ 포장재의 상·하차시 관리인력의 부족(파렛트작업이 곤란할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재의 소량 사용 회원은 “전유련중앙물류”에서 관리 반출</li> <li>○ 필요시 공동집하 장소 설치를 포장제조업체에 지원 요청</li> <li>○ 파렛트의 조속한 보급으로 상·하차의 기계화</li> <li>○ 포장재 제조업체에 포장재관리 인력지원 요청</li> <li>○ 포장재 사용 신청은 최소 1주일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회원종용</li> </ul>
4. 미정산 회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재에 대하여 회원의 관리 소홀, 시장출하의 저조 등 유실량이 많아 포장재대금 정산금액이 커져서 정산을 기피할 우려.</li> <li>○ 본 연합회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미정산시 강력한 행정제재가 미흡할 수 있음</li> <li>○ 회원의 개별사업 특성상 계속적인 산지이동으로 회원의 소재파악이 어려움</li> <li>○ 회원간 배추포장박스 인수·인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신의 책임을 다른 회원에게 책임전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원칙의 철저한 고수 및 보증금 선납 조치로 포장재 보급에 의한 부실채권금액의 최소화</li> <li>○ 회원에게 공급된 포장재의 수량과 시장출하량을 기준으로 기본적 정산방향을 고수</li> <li>○ 회원간 인수·인도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최초로 공급받은 회원을 기준으로 정산 청구</li> <li>○ 정산 불인정 회원에 한해서는 차후 법적대응</li> </ul>

자료 :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 중앙연합회 &lt; 1998. 12&gt;